

[04]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의사

사업장명: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

* 상태보고서는 사업주(관리책임자)가 선람하여 내부결재 후 신속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1. 보건관리상태 방문일자: 2026-04-29

사업자 현황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비제조업				
	업종분류: 자동차 종합 수리업				
근로자현황	총 근로자수 : 170명			입사자수	퇴사자수
전 월	0명	사무직: 남 0명 / 여 0명	사무직 외: 남 0명 / 여 0명	0명	0명
당 월	170명	사무직: 남 0명 / 여 0명	사무직 외: 남 170명 / 여 0명	0명	0명
산업재해 발생현황	총 재해자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업무상질병 재해	재해율(%)
전 월	0명	0명	0명	0명	0
당 월	0명	0명	0명	0명	0
연누적현황	0명	0명	0명	0명	0

2. 업무수행내용

◎ 사업장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요건)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위원회 대상 금일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확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회의 결과를 사내게시·사내방송·자체정례조회 등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 지도

◎ 작업환경 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요건)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작업환경측정 관리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최근 측정일/측정기관 : 2025년 07월 28일/ 재단법인 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 유해인자 : 소음/혼합유기화합물(Em)/용접흄/활석(석면불포함)/이산화티타늄 - 특별관리물질대상 : 비대상 - 측정결과 :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없음 - 차기측정주기/예정일 : 6개월/2026년 01월 27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에 의거 도장반의 공정 변경(부스증설 및 이전)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는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매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지도 - 동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함을 지도,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대상임 *참고 :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건강관리

업무수행내용	점검결과 (보건관리상태)				지도내용(개선요건)
	개 선	진 행	미 개 선	미 해 당	

건강진단 관리		○		건강진단 (일/특 대상) (일반건강진단) 실시중 : 2026년1~12월/한신메디피아 포함 다수 특수건강진단병원 (특수건강진단) 1) 일정 : 2025년 실시완료-> 2026년 연중 실시 예정 /kmi외 다수 특검병원 2) 주기 : 12개월(전년도 주기 지연없이 실시지도) 3) 특검유해인자 -일반정비 : 이소프로필알코올/에틸렌글리콜(C) n-헥산/메틸렌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n-헥탄/구리(분진, 미스트)/알루미늄(금속 분진)/산화아연(분진) 2-부톡시에탄올/흑연/아세톤/크실렌/메틸에틸케톤/기타광물성분진/아닐린 및 그 동족체 -판금반 :이소프로필알코올/n-헥산/활석(석면불포함)/크실렌/톨루엔/에틸벤젠/산화철(분진, 흙)/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구리(흙)/알루미늄(흙)/자외선 -도장반(샌딩, 도장) 용접흙/ 활석/크실렌/에틸벤젠/스티렌/2-부탄올/n-부탄올12샌딩/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n-아밀케톤/톨루엔/ 크롬(3가)화합물/주석(산화, 무기화합물)/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알루미늄(금속분진)/규산염(운모)/산화철(분진, 흙)/ 메틸이소부틸케톤/아세톤/헥사메틸렌디아민이소시아네이트/ 이소부틸알코올/클로로벤젠/석영/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사논/ 디클로로메탄/ 메탄올/ 1,2-디클로로에틸렌/ 흑연/ (배치전특검/배치후 첫번째특검) : 실시확인, 당월대상유무확인
뇌심혈관계질환 관리		○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관리 1)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및 위험군에 대해 면담을 통한 사후지도 및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1)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평가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2)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고위험군” 또는“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적합성평가 실시 (3) 업무적합성평가결과상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는 보건관리업무담당자를 통한 사업주에게 전달 2) 기초질환관리 (1) 지속적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초질환 관리 실시 (2)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 시 고려 (2)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 필요할 경우 권고

3.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총괄)(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

근로자건강관리 1. 근로자의 건강검진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개별상담 2. 업무상 질병 예방지도 1) 수시스트레칭 지도, 업무상 작업자세 상담 2) 수면위생, 식이관련 상담 3) 뇌심혈관계질환 고위험군 사후관리 4) 건강증진활동 : 금연, 운동, 절주, 영양 관련 지도					
방문일자	2026-04-29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위: 담당자 성명: 정주영	代 (인)	보 건 관 리 자 자격: 의사 성명: 최희재 (인)